

# 충주시립택견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강명권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517
----------	------

발의일 : 2013. 6.

발의자 : 강명권, 최용수, 이호영,  
김현식 의원

## 1. 제안이유

시립택견단의 처우를 개선하여 택견의 원형보존 및 전승보급에 기여하고 시립택견단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협의회 위원수 15명에서 20명으로 변경(안 제3조 제2항)
- 시립택견단 상임 시범단 수석단원제 운영에 따른 관련조항 정비(안 제2조)
  - 상임 시범단 중 수석단원 1명을 둠.
- 단원의 위촉에 관한 사항 정비 및 승급 조항 신설(안 제5조)
  - 단원은 자격을 갖춘 사람 중 공개전형을 통해 시장이 위촉함.
  - 단원은 근무기간과 업무수행 능력에 따라 승급할 수 있는 규정 신설
- 휴가는 「충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」에 준하여 실시토록 관련 조항정비(안 제16조)
- 징계에 선동 및 집단행동한 자 신설 (안 제18조)
-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 정비

## 3. 관계법령

- 해당없음

## 4. 입법 예고 결과 : 의견 없음

## 5. 기타 참고사항(집행부 의견조회)

- 의견 없음

## **충주시립택견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**

충주시립택견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충주시립택견단 설치 및 운영 조례”를 “충주시립택견단 설치와 운영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”를 “설치와 운영에”로 한다.

제2조제2항 중 “구성한다”를 “구성하고, 상임 시범단 중 수석단원 1명을 둔다”로 한다.

제5조의 제목 “(단원의 자격)”을 “(단원의 위촉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단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공개전형을 통해 시장이 위촉한다.

제5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수석단원 : 상임시범단 중 택견 2동 이상 취득자로 단원 통솔능력이 있는 자

제5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공개전형은 실기와 면접으로 하며, 면접은 실기에 합격한 자에게만 시행하고 전형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.

③ 단원의 최초 위촉등급은 사무국장과 상임강사는 지방공무원 7급상당, 수석단원과 상임시범단은 지방공무원 9급상당으로 위촉하고 근무기간과 업무수행 능력에 따라 택견전수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승급 위촉할 수 있으며, 승급에 필요한 최저근무연수, 승급의 제한, 그 밖에 승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9조 중 “범위 안”을 “범위”로 한다.

제13조 중 “수행함에 있어서”를 “수행함에”로 한다.

제15조 중 “관하여”를 “관한”으로 한다.

제16조제1항 중 “범위 내에서 휴가 및”을 “범위에서 휴가나”로, “연가를 포함하여 연간 15일 이내로 한다”를 “「충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」에 따라 적용한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상해로 인하여”를 “상해로”로 한다.

제18조제1항제1호 중 “태만히 하거나”를 “게을리하거나”로 하고,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## 5. 선동 및 집단행동한 자

제18조제2항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2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 시범단의 외부출연으로 발생되는 수입금은 시의 세입으로 한다.

제23조제2항 중 “수입금에 관하여는”을 “수입금은”으로, “범위 안”을 “범위”로 한다.

제24조 중 “시행에 관하여”를 “시행에”로 한다.

## 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단원에 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단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충주시립택견단 설치 및 운영 조례</u>	<u>충주시립택견단 설치와 운영 조례</u>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택견의 전승발전을 위한 충주시립택견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 ----- --- <u>설치와 운영에</u> ----- -----.
제2조(구성) ① (생 략)  ② 단원은 택견전수관장 1명, 택견전수관 부관장 1명, 사무국장 1명, 상임 강사 5명 이내, 상임 시범단 15명 이내로 <u>구성한다.</u>  ③ (생 략)	제2조(구성) ① (현행과 같음)  ② ----- ----- ----- ----- <u>구</u> <u>성하고, 상임 시범단 중 수석단</u> <u>원 1명을 둔다.</u>  ③ (현행과 같음)
제5조( <u>단원의 자격</u> ) ① <u>단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.</u>  1. ~ 4. (생 략)  <u>&lt;신 설&gt;</u>	제5조( <u>단원의 위촉</u> ) ① <u>단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</u> <u>중에서 공개전형을 통해 시장이</u> <u>위촉한다.</u>  1. ~ 4. ( <u>현행과 같음</u> )  5. <u>수석단원 : 상임시범단 중 택</u> <u>견 2동 이상 취득자로 단원</u> <u>통솔능력이 있는 자</u>  ② <u>공개전형은 실기와 면접으로</u>
<u>&lt;신 설&gt;</u>	

하며, 면접은 실기에 합격한 자에게만 시행하고 전형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# <신 설>

③ 단원의 최초 위촉등급은 사무국장과 상임강사는 지방공무원 7급상당, 수석단원과 상임시범단은 지방공무원 9급상당으로 위촉하고 근무기간과 업무수행 능력에 따라 택견전수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승급 위촉할 수 있으며, 승급에 필요한 최저근무연수, 승급의 제한, 그 밖에 승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9조(급여 및 실비보상)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·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13조(복종의 의무) 단원은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단장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.

제15조(근무시간 등) 단원의 근무시간은 지방공무원 근무시간에 준하여 근무하되 근무에 관하여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9조(급여 및 실비보상) -----  
----- 범위-----  
-----  
-----.

제13조(복종의 의무) -----  
--- 수행함에 -----  
-----.

제15조(근무시간 등) -----  
-----  
----- 관  
한 -----  
-.

제16조(휴가 및 병가) ① 상임 강사, 시범단원, 사무국장은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휴가 및 연가를 할 수 있으며, 그 일수는 연가를 포함하여 연간 15일 이내로 한다.

② 상임 강사 및 시범단원이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직무가 불가능 할 경우에는 병가를 할 수 있으며, 그 일수는 연간 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.

제18조(징계) ① 단장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.

1.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유기하였을 때

2. ~ 4. (생략)

<신설>

② 기타 조례, 규칙에 의한 지시 · 명령을 위반한 자

제23조(외부출연수입금) ① 시범단이 외부출연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수입금에 대하여는 시의

제16조(휴가 및 병가) ① -----  
-----  
----- 범위에서 휴  
가나 -----  
----- 「충주시 지방공무원  
복무조례」에 따라 적용한다.  
② -----  
----- 상해로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제18조(징계) ①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1. ----- 게을리하거나 -----  
-----

2. ~ 4. (현행과 같음)

5. 선동 및 집단행동한 자

② 그 밖에 -----  
-----

제23조(외부출연수입금) ① 시범단의 외부출연으로 발생되는 수입금은 시의 세입으로 한다.

세입으로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외부출연의 수입금에 관하여는 단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시연에 참가한 단원에게 수입금의 60퍼센트 이내에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특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24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② -----

수입금은 -----

-----

----- 범위 -----

-----

제24조(시행규칙) ----- 시

행에 -----

-----.